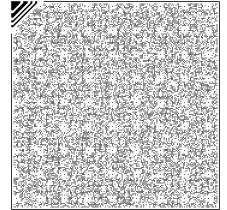




부산지방고용노동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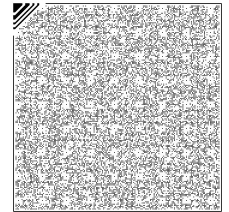


수신 관내 건설사 대표이사 및 현장대리인 귀하
(경유)

제목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요청

1.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2. `22.1.27.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, 최근 50억 이상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.
3. 이에, 경영책임자* 등이 안전보건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조치하셔야 하는 사항을 불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경영책임자께서 직접 확인하신 후 미비사항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하시기 바라오며,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원할한 이해를 돕기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(<https://www.koshasafety.co.kr>) 등을 게시 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* 관내 건설업본사 소재 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, 그 외 사업장은 현장소장
4. 더불어 관내 건설사의 비상연락망 구축을 위해 개별 연락 드릴 예정이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불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할 일 1부. 끝.

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



근로감독관 **이준호** 과장 전결 2022. 4. 18.
박창규

협조자

시행 건설산재지도과-1964 (2022. 4. 18.) 접수

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36 (연산동 1470-1 부산지방노동청)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51-850-6490 팩스번호 051-851-7424 / jhyi@korea.kr / 비공개(5,7)

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